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유용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4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1월 21일
발 의 자: 유·용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기대, 김정태, 김제리,
양민규, 이광호, 이종환,
장상기, 홍성룡, 황규복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준주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 필요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므로, 조합정관이 정하는 경우에 준주택 중 오피스텔 소유자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로 오피스텔 소유자를 추가하도록 함(안 제37조제1항제1호).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1호 중 “특정무허가건축물”을 “특정무허가건축물,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7조(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 대상)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.</p> <p>1.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(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<u>특정무허가건축물</u>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)을 소유한 자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37조(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 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특정무허가건축물,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</u> -----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